신혼부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저출산 극복의 대책으로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를 양육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전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주거 지원, 출산 지원, 보육•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하여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1
1. 신혼부부 개요 4
1.1. 결혼의 성립 4
1.1.1. 결혼의 성립 요건 4
1.1.2. 신혼부부 콘텐츠 개관 5
2. 주거지원 6
2.1. 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6
2.1.1. 신혼부부 전세임대 6
2.1.2.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8
2.1.3. 신혼부부 행복주택 9
2.2. 주택구입지원 10
2.2.1.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3. 출산지원 12
3.1. 임신·출산 지원 12
3.1.1. 신혼부부 건강검진 12
3.1.2. 임신·출산 진료비 12
3.2. 난임부부 지원 14
3.2.1. 난임부부 시술비 14
4. 보육·양육지원 16
4.1. 보육지원 16
4.1.1.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
4.2. 양육지원 17
4.2.1. 양육수당 17
4.2.2. 아이돌봄 서비스 19
4.3. 자녀 관련 세제 혜택 20
4.3.1. 자녀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20
5. 일·가정 양립지원 21
5.1. 근로시간 단축 21
5.1.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21
5.2. 출산휴가 육아휴직 22
5.2.1. 출산휴가 22
5.2.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5
5.3.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27
5.3.1.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28

1. 신혼부부 개요

1.1. 결혼의 성립

1.1.1. 결혼의 성립 요건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결혼의사가 합치할 것

▪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를 것

▪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하며(「민법」 제807조),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만 18세)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근친혼이 아닐 것

▪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중혼이 아닐 것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

▪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

▪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

▪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 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 결혼의 성립 더 자세히 알아보기

1.1.2. 신혼부부 콘텐츠 개관

신혼부부 콘텐츠 소개

신혼부부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 『신혼부부』 콘텐츠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신혼부부 개요	▪ 결혼의 성립요건 ▪ 신혼부부 콘텐츠 개관
주거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 신혼부부 행복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출산 지원	▪ 신혼부부 건강검진 ▪ 임신·출산 진료비 ▪ 출산 축하금 ▪ 난임부부 시술비
보육·양육 지원	▪ 영유아 보육료 ▪ 양육수당 ▪ 아이돌봄 서비스 ▪ 자녀관련 세제 혜택
일·가정 양립 지원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2. 주거지원

2.1. 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2.1.1.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호 및 제7조의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주거복지사업-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참조].

> ※ 용어정리
>
> ·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호).
>
> · "공공주택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2호).
>
> · "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
> ·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호).
>
> ·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6호).
>
> ·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0호).

입주대상자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1)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2)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5) 신생아 가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소득기준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1.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이고,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임대조건[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주거복지사업-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 , Ⅱ 형) 참조]

▪ 임대보증금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2024. 12. 기준, 변동될 수 있음)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1.45억원	1.1억원	9천5백만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	2.4억원	1.6억원	1.3억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재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2항).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 : 2년 단위 4회까지 재계약 가능.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하여 재계약 가능

입주신청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제2항).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자세한 모집공고와 신청절차 등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청약-임대주택> 및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사목1), 2)].

순위	내용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2순위내 경쟁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경우: 1점 ② 자녀 수: 3명이상(3점), 2명(2점), 1명(1점)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거주기간: 3년 이상(3점), 1년 이상 3년 미만(2점), 1년 미만(1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⑤ 혼인기간: 3년 이하(3점), 3년 초과 5년 이하(2점), 5년 초과 7년 이하(1점)	

※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급비율

▪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은 30%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국민임대주택 더 자세히 알아보기

2.1.3.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개념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신혼부부 일반형 행복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

▪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받을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

신혼부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9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

▪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받을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

> ※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행복주택 더 자세히 알아보기

2.2. 주택구입지원

2.2.1.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제1항).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5%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순위	내용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3. 출산지원

3.1. 임신·출산 지원

3.1.1. 신혼부부 건강검진

신혼부부 건강검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국가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 결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 ※ 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포함)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포함)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
>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와 그 배우자
>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이용권(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사용범위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의(임신·출산 사실 확인) 또는 조산사(출산 사실 확인)가 그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이용권은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 ※ 그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
>
> ※ 국민행복카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개요

- 임신한 수급권자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를 포함)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포함)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

지원 금액

-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 다만,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추가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4항).

※ 그 밖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제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구전략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출산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난임부부 지원

3.2.1.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이란?

▪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p.130-13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지원 내용(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p.131-133)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최대금액: 아래의 표 참조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기준 더 자세히 알아보기

4. 보육·양육지원

4.1. 보육지원

4.1.1.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이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6).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7).

연령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584,000원	584,000원	876,000원
1세반	515,000원	515,000원	772,500원
2세반	426,000원	426,000원	639,000원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90).

※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목록-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6).

▪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7).

연령	기본보육	야간	24시
3~5세반('26.1.12.28.)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3~5세반('26.3.1)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그 밖의 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305 ~ 317)

종류	지원대상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 원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예외있음
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5세 아동 ※ 예외있음
방과 후 보육료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그 밖의 영유아 보육 더 자세히 알아보기

4.2. 양육지원

4.2.1.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6개월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318]

일반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은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참조).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276).

월령	지원금액
24 ~ 86 개월 미만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참조).

월령	지원금액
24 ~ 35개월	월 20만원
36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참조).

월령	지원금액
24 ~ 35 개월	월 15만 6,000원
36 ~ 47 개월	월 12만 9,000원
48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목록-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념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아이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및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을 돌보는 질병감염아동돌봄으로 구분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71~78 참조).

- 시간제 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입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은 1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입니다.
- 질병감염아동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목록-아이돌봄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자녀 관련 세제 혜택

4.3.1. 자녀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자녀 1인 당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비과세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자녀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가정 양립지원

5.1. 근로시간 단축

5.1.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위반 시 제재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산부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위반 시 제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시간 외 근로 금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전단).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쉬운 근로로 전환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더 자세히 알아보기

5.2. 출산휴가 육아휴직

5.2.1.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임신 중인 여성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유급휴가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다음의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함)로 한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의2제1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받게 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고용24 홈페이지-고객센터-정책/제도-지원금 모의계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후 동일업무 등 복귀 보장

·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부여받은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 출산전후휴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유산·사산휴가

· 사업주는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함)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배우자(남편)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함)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 2. 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2. 23. 시행) 부칙 제2조].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제3항).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2).

5.2.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신청대상

▪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액

▪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 ※ 육아휴직 후 동일업무 등 복귀 보장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6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table>
<tr><td rowspan="2">(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td><td rowspan="2">X</td><td>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td></tr>
<tr><td>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td></tr>
<tr><td>(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td><td>X</td><td>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10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td></tr>
</tabl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동일업무 등 복귀보장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19조의2제6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더 자세히 알아보기

5.3.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5.3.1.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등의 개념

▪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

일자리창출 지원

▪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1항).

▪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2항).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

▪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1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함)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

직업교육훈련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일경험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1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2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3항).

경력단절 예방 사업

▪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제1항).

-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위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제2항).